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A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며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함

있을 것이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근속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Q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A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과 통상임금산정지침 제2조 제1호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

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고 통상임금산정지침 제3조 제1항에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주40시간제 실시 때 월차수당으로 지급되던 금액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임금보전 당시 합의취지 및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임금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중합노무법인한솔사무 (031-877-78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이웃에서 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Q 제가 거주하는 옆에는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종합병원의 쓰레기장과 영안실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뿐만 아니라, 조문객들의 곡성으로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A 민법 제217조 제1항에서,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시체실을 그곳에 안치한 시체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의 확산방지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 시에 시체의 일반인에 노출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이웃이 받게 되는 피해와 고통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受忍)의 정도를 초과한 것이다"(대법원 1974.12.24. 68다1489)라고 하였고, 또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부지와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연립주택의 부지는 모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현황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그 연립주택의 전면이 그 병원의 부지 쪽을 향하여 건축된 다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병원이 건축되었으며 그 연립주택 부지와 병원 부지 사이의 경계로부터 그 병원의 3

층 산부인과 입원실의 연립주택 쪽 창문까지의 직선거리가 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록 그 병원이 그 부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에 적합한 시설이고 그 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은 공익시설이라 하여 운영함에 있어 응급실과 영안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병원 및 연립주택의 현황과 그 위치한 지역의 형태,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의료법인으로서의 그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생활방해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민법 제217조, 제751조, 1997.10.28. 95다15599).

☞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Q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란?

A 현행 전기요금은 사용용도에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용 요금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전기의 과다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6단계의 누진요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구간별로 더 비싼 단가의 요금을 적용하며 특히 월 300kWh 초과 부분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단가가 적용되어 사용량 증가에 비해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난방기기 가동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은 주택용 누진제로 인해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전기를 절감해서 쓰는 지혜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주기 위해 한전에서 1주택수가구 요금제와 대가족요금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 난방기기별 전기사용량 계산방법은?

A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평월의 전기사용량이 300kWh인 가정에서 소비전력이 300W인 온열매트를 하루 8시간씩 사용하게 되면 늘어나는 전기사용량은 72kWh(=300W×8시간×30일)이며 약 20,000원의 전기요금에 추가되며, 소비전력이 800W인 전기난로를 하루 8시간씩 사용하게 되면 늘어나는 전기사용량은 192kWh(=800W×8시간×30일)이며 약 70,000원의 전기요금에 추가되며 됩니다.

또한 소비전력이 2,400W인 전기온풍기를 하루 8시간씩 사용하게 되면 늘어나는 전기사용량은 576kWh(=2,400W×8시간×30일)이며 350,000원의 전기요금에 추가되며 됩니다.

☞ 문의 :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는데 선불금 때문에 탈선매매를 결심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선매매를 한 사람들이 성을 파는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이 유를 불문하고 전면무효가 됩니다. 따

라서 소위 포주와 성매매 여성 사이에 오간 선불금 등은 성매매라는 불법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이 때문에 갖지 않아도 되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선불금을 고리로 성매매로 유인해 강요와 감금 등을 통해 이탈을 못하게 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질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재

지 근처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연락을 취하시어 탈선매매 관련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탈선매매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및 관련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로 인한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로의 연계 지원을 통해 최장 1년 6개월 동안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역시 성매매로 인한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법률지원과 더불어 전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진학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신경외과 과장 **배준석**



위식도 역류질환-1

위식도 역류질환이란 위 혹은 십이지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되어 흉부작열감, 산 역류등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거나 식도의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서양에서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위식도 역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유발될 수 있는데, 가슴이 타는 듯한 흉부작열감이나 위산 역류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흉통, 천 목소리, 인두 이물감 및 인후통, 만성적인 기침 및 천식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유발되기도 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식도조영술, 내시경검사, 24시간 식도산도검사 등의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흉부작열감, 위산 역류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만성적으로 있다면 증강성 기침, 인두 이물감 및 인후통, 천 목소리 등과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

서 호흡기나 혹은 이비인후과적으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면 적절한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흉부작열감은 가슴쓰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통상 식후 30분에서 2시간 정도에 나타나고 10분 이상 지속되지? 한번에 수시간씩 지속되지는 않으며 재산체에 의해 조기에 완화되기도 한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식도점막의 손상이 심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내시경에서 매우 심한 역류성 식도염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에서도 그 증상은 경미한 경우도 종종 있다.

위식도 역류의 진단을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흔히 시행되는 검사는 내시경 검사이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식도 점막의 손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위나 십이지장 등 다른 상부 위장관의 이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60)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택이 남편과 부인 명의로 2채가 있으며 제조업 하고 있으며 공장 건물은 남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A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이며,

신고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법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기준금액을 보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3억원이며, 별도합산토

지는 40억원이며, 관광호텔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공장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별도합산토지는 200억원입니다. 그러므로 보유 부동산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주택은 2채의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200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부동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되는 부동산도 있으나 고액부동산 보유자는 미리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 정성과 손 맛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음헨가든”



## 장어 숯불구이 전문

- |                   |                 |                 |
|-------------------|-----------------|-----------------|
| <b>메뉴</b>         | <b>메기매운탕</b>    | <b>영양돌솥밥</b>    |
| • 장어구이 1kg : 4만원  | • 메기매운탕 大 : 3만원 | • 메기매운탕 中 : 2만원 |
| • 한치물회(한접시) : 1만원 | • 돼지갈비          | • 한치회밥          |
|                   |                 | • 추어탕           |

☎031-532-2525~6

